

감리지적 사례 FSS/2008-08 :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 쟁점분야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결정연도 : 2016년
- 회계결산일 : 2007.12.31. ~ 2013.12.31., 2014.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플랜트 설계, 제작,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A사는 프로젝트별 손익을 ‘프로젝트별 손익 파일’(엑셀)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파일에 프로젝트별 수주액, 공사예정원가, 발생원가(직접비, 간접비)집계, 공사진행률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A사의 회계팀 담당자는 ‘영업팀’으로부터 확정된 수주계약서와 ‘PM팀’으로부터 목표(영업)예산서를 수령하여 이를 엑셀로 집계·관리하였으며, 공사진행률 산정을 위한 프로젝트별 원가집계는 ‘구매팀·외주관리팀’ 등으로부터 수령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등을 회계시스템에 입력(원가금액, 프로젝트 번호 등)하여 관리해 왔다. 그러나 A사는 heavy-tail 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인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직면함에 따라, 추가차입과 상장 등을 위해 재무상태(매출액, 이익률 등)를 양호한 것처럼 보이도록 ’06년부터 아래의 방식으로 회계분식을 하였다.

- 1) A사의 회계팀은 대략의 매출·이익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면 경영진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매출·영업이익 등으로 맞출 것을 지시하였고, 회계팀은 경영진이 지시한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프로젝트별 손익파일(엑셀)’에서 수주액, 공사예정원가, 발생원가의 프로젝트 번호 등을 조작하고, 경영진이 요구한 매출 등을 맞추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2) A사는 ‘10년에 수주 취소된 S건설 및 D건설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 59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이를 가공의 원재료비와 임의 대체하였고, D건설의 허위 매출채권 8억원을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임의 대체하였다. 또한, A사는 거래은행과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팩토링 약정(‘10년은 50억원, ’12년은 39억원)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 (‘10년 30억원, ’12년은 39억원)하였음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 양도로 회계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 1) A사는 공사별 진행현황을 파악한 후 계약 취소 또는 수주실패한 공사에 대하여 가공의 수익을 인식하였고, 공사 중단되었다가 재계약된 프로젝트에 대해 수익을 중복으로 인식하였으며, 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원가 발생시 타 공사에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여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다.

2) A사는 허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고 외부감사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가공의 원재료비로 처리하거나 유형자산과 계정 대체하였고, 매출채권 담보차입거래를 양도거래로 처리함에 따라 차입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3에 따르면 건설계약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1)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3)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2에 따르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문단 16, 21에 따르면 계약원가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으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가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회사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수주 실패 등에 따라 회사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가공의 수익을 인식하거나 수익을 중복으로 인식하였고,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의 공사진행률로 산정해야 함에도 특정 공사에 귀속되는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여 다른 공사의 공사진행률을 높이거나 계약원가를 임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여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20에 따르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최종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매출채권 양도가 아닌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 양도로 회계처리 하여 차입금을 과소계상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칙 및 감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A감사인은 '07년과 '08년에 공사진행률과 대금청구율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회사보관 외부증빙을 확인하는 등의 상당한 감사절차는 취하였으나, 원가가 수주일보다 先발생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계약체결 前사전협의로 원가가 先발생할 수 있다는 회사 답변만을 신뢰하여, 발주처와 회사의 사전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메일팩스 등)를 검토하거나, 발주처 담당자와의 통화 등 외부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B감사인은 '09 ~ '12년에 회사제시 증빙자료(수주계약서, 예산서, 원가증빙 등)와 원장내역과의 대조·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매출채권 조회대상 목록에 대한 완전성 未확인 및 매출채권 조회서 발송을 회사를 통해 실시하는 등 매출채권 조회서 발송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미청구공사 금액이 총자산의 40%에 달하였고 대금청구율과 진행률의 차이가 큰 공사가 다수였음에도 명세서 확인 등의 절차 외에는 입증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미청구공사채권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B감사인은 완성공사에 대하여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외부감독관의 공사완료확인서 등의 증빙을 未확인하는 등 완성공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매출채권 담보차입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未확인하는 등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C감사인은 '13년에 회사의 내부통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입증감사 성격·시기·범위를 확대하지 않았고, 회사제시 증빙자료(수주계약서, 재공품 목록 등)와 원장내역과의 대조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13년에 수주취소·중단된 공사 건의 경우 '12년부터 공사진행률이 이미 100%였고, 납품이 이루어졌음에도 대금청구가 지연되고 청구율이 낮았으며, 발주처가 동일한 공사진행률 100%인 他공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대금청구액이 적고 未청구율이 높은 점 등 이례적인 상황임을 파악하였음에도 징구한 수주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가적인 절차 없이 인터뷰만으로 감사절차를 종결하는 등 미청구공사채권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C감사인은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외부감독관의 공사완료확인서 등의 증빙을 未확인하는 등 완성공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수주산업은 공사예정원가 임의축소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감사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경영자의 추정치와 독립적인 추정치와 비교,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회사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시자료(전산원장, 계약문서, 원가증빙 등) 및 신뢰성이 높은 외부증빙(수출신고필증,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감사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